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 재해로 인한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무상 지원

지난달 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때마침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한 터라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매년 여름이나 겨울이면 폭우,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호에서는 재해 발생시 종종 듣게 되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납부기한의 연장

### 1) 개념

'납부기한의 연장' 이란, 말 그대로 조세를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기한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를 보면 납부기한의 연장은 해당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때로는 국세청장의 직권에 의한 연장도 가능하다.

### 2) 기한연장의 사유

첫째,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

### 나 도난을 당한 때

둘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증하거나 사망하여 상증인 때

셋째,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넷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다섯째,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여섯째, 그 외 첫째·둘째 또는 넷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3) 기한연장의 절차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해야하는데,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담보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한 때 등의 연장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징수유예제도

### 1) 개념

징수유예란, 국세징수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자에게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를 미뤄주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또는 납세고지나 독촉을 받은 후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 2) 징수유예의 사유

첫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둘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셋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넷째,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다섯째, 기타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3) 징수유예의 절차

징수유예제도도 기한연장의 경우와 같이 해당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나 독촉(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의 개시 전에 위의 사유로 국세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납세고지를 미루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할 수 있다. 징수가 유예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

징수유예의 기간은 9월 이내로 하며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가 있는데, 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는 6월이 지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해당 사유가 계속되거나 유예를 취소할 사유가 발행하지 않으면 9월의 범위 안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

지 않거나, 담보변경 또는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3. 재해손실세액공제

#### 1) 개념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규정하고 있다.

#### 2) 공제를 위한 절차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총액의 20% 이상(과거 30% 이상이었던 것이 2008. 12. 26 개정으로 비율이 낮아졌음)이 상실된 경우에 적용되며, 재해상실의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 당시에 부과되지 않은 세금과 이미 부과된 세금 중 미납세금, 재해발생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상으로 재해상실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분들께 세정지원 해드립니다!

#### -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은?

우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채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해 피해가 큰 납세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할 방침이다.

####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직접 신청을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http://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후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신청서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된다.

또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 문의 : (02)397-1502 국세청 징세과